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 1 장 위원회 구성
- 제 2 장 심의·의결 절차
-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 제 4 장 위원회 운영 결과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기간은 2012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이며, 재보궐선거 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운영되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구 분	운영 기간	선거일	비 고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협회, 공정언론시민연대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 위원 명단 】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박 기 동	현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원 병 설	현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연장자순)	문 명 호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시민단체)	
	박 석 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김 택 근	전 경향닷컴 사장	민주통합당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연장자순)	김 준 범	전 국방홍보원 원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인단체)	2012. 10. 31. 사퇴
	권 문 한	현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한국신문협회 (언론인단체)	2012. 11. 21. 위촉
	오 세 헌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새누리당	
	이 준 용	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조 우 성	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사진. 왼쪽부터 오세헌, 김택근, 김준범, 박기동, 권 성 언론중재위 위원장, 문명호, 박석태, 원병설, 조우성 위원, 오광건 사무총장〉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 심의원들과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2년 3월 5일)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선심위 규칙상 제재조치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선심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보도심의기구 제재조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7. 11. 29. 2007헌마290)을 존중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경고결정문 게재와 주의 사실 게재를 추가하고 주의, 권고 외에 '경고'를 부활하였다.

둘째, 선심위 안전에 대해 권고 등의 조치 및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하도록 했다.

셋째, 시정요구 및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결정문으로 송부함에 따라 별도 처리결과통보서 서식을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2년 3월 8일)

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 선거기사의 범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의 범위를 일반 보도외에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언론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고금지규정에서 예외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단서규정을 삭제하였다.

셋째,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 중 경고조치를 부활하고 사과문 게재결정의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제재조치의 유형과 요건을 재정비하였다.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제4장

위원회 운영 결과

심의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총선, 대선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가 구성돼 운용한 만큼 심의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언론사로 하여금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선거기사 심의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관련 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언론사들이 심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복 위반 유형(예: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공정보도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사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였으며 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역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 등을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위반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등 타 선거보도 심의기구와 유사·동일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했다.

아울러 제재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 외에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입법화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선심위를 운영하면서 제도상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국회에 발의된 제재조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선심위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심의위 회의에서는 심의기준 위반 여부 못지않게 언론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제재수위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또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고도 사과문이 게재된 지면에 해당 매체가 지지하는 후보 관련 기사를 나란히 실은 경우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사과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언론사에게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다. 향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개정안에 더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심위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선심위의 상설화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까지 설치되어 총 4개의 심의위가 구성되는 등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했다. 또한 각각의 선심위별로 많은 수의 위원들이 교체 구성되어 심의기준의 적용과 제재 수위 및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해석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선심위에서 논란이 된 시정요구 대상과 절차, 반론보도청구 회부 등 공직선거법상 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와 심의기준상 각종 규제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규정 검토 및 개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2012년 1월에 구성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2월 하순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중앙선관위와 국회 등에 제출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